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-246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7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상 호	폐지되는 업무	폐지일자
케이아이피엠투자자문 주식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. 6-2-1 투자일임업	2017.9.7.
피스트원투자자문 주식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. 5-2-2 투자자문업	2017.9.7.